

(우)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5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7-12162호

시행일자 2023. 1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호(2023. 1. 2.)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에 안내해드립니다.

- 다 음 -

※ 주요내용 :

- 의료급여 식대를 의원급 기준 상향 조정 등

- #붙임 1.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공문. 1부.
2.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, 대한의학회장, 26개 전문학회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 개원의협의회